



PRODUCT ORDER FORM 제품주문서

우)06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0(역삼동, 토탈스위스빌딩) Tel : 02-2051-8833 | Fax : 0505-310-8833 | www.totalswisskorea.com

접수자명 : _____ 연락처 : _____

주문인 정보

성명		회원번호		연락처	
----	--	------	--	-----	--

배송정보

제품수령방법 직접수령 택배수령

※ 직접수령 시 인수 확인 회원번호 연락처 성명 (인)

수취인 성명 연락처

배송지 주소 (우: _____)

주문내역

제품코드	제품명	PV	수량	가격	합계
합계					

결제방법

현금 금액 (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653201-04-070325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입금 후 고객센터(02-2051-88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 :

신용카드

금액 (원)	카드소유주명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 (월/년)	할부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불 <input type="checkbox"/> 개월

● 본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토탈스위스코리아(주)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을 경우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본 주문을 조합이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합 홈페이지 (www.macco.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주문과 관련하여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상기 정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회사규정 및 청약철회 등의 약관을 확인하였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제품구매 약관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다단계판매원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현금, 신용카드,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토탈스위스코리아(주)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직접수령 : 상품대금의 입금확인 후 상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배달수령 : 상품대금의 입금확인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통상 5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1. 토탈스위스코리아(주)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합니다.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법, 용량, 보관, 취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판매원은 소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호내용을 교차하여야 합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소비자상담실 : 02-2051-8833

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금지사항

1. 상품 주문 시 상품대금 외에 일체의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2. 무통장입금의 경우 주문자와 동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카드매출의 청약철회는 7일 경과 후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철회시 회사가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청약철회신청서, 신분증, 카드전표, 본인이 수령한 상품을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가.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다단계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나.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토탈스위스코리아(주)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의 보유를 하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3. 법 제16조, 제7조 제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4.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외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패키지 상품 구매 후 반품을 원할 경우 패키지 상품이 모두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시 단품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원상태의 패키지 구성이 되어야 환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교환이란 합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 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상내용
소비자	대금 환급 금액의 100% (소비자 1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일로부터 14일 기간 동안 6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함)
판매원	대금 환급 금액의 90% (판매원 1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1,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함)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 공급일 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그 재화 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 공급일 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그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청약 철회 · 계약 해제 통보서(양식 변경 후)

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연락처	주소		
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 관련 사항				
상품 · 서비스명				
계약 연월일	계약서 받은날	상품 · 서비스 제공받은 날		
상품수량	계약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계약 경위 및 사항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사유			
제품의 현재 상태	상품반환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의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반품은 판매원 본인이 직접 방문처리 하셔야 하며 대리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외규정은 회사 규정에 따름)

*본 신청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였으며, 그 밖의 계약조건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과 토탈스위스코리아(주)의 규정에 따릅니다.